

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신청 안내

1.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해외기술인력을 발굴·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을 해소
- 선진 해외 기술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

2. 지원 대상 : 중소기업 제조업,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5종에 한함

(제조업 : 제조업 전업율30%이상)

(지식기반서비스업5종 : 부가통신업64292,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관련운영업72, 자연과학연구개발업731,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32, 전문디자인업7460)

3.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개요

가.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 (장기 고용)

- 외국 전문인력과 3개월이상 고용계약을 통해 고용, 도입하여 기술분야에 활용시
→ 보조금지급(도입인력 항공료, 연봉의30~50%, 인력발굴수수료 220만원)

나. 외국인전문가컨설팅지원 (단기 컨설팅)

- 외국인전문가를 도입하여 연 90일 이내 컨설팅을 실시
→ 총소요비용(전문가 항공료, 자문료, 체재비, 보험료)의 60~70% 지원

4. 세부 지원 내용 및 절차

가.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(장기 고용)

- 외국 전문인력과 3개월이상 고용계약을 통해 고용, 도입하여 기술분야에 활용시
→ 보조금지급(도입인력 항공료, 연봉의**30~50%**, 인력발굴수수료 **220만원**)

(1) 도입인력 자격

- 해당분야 석사(박사)학위자
- 학사로서, 학사이후 **2년 이상** 해당 분야 경력자
- 비전공 학사(석사)인 경우 **5년 이상** 경력자(분야 무관)
- 기술선진국 인력의 경우 해당분야 **10년 이상** 경력자(비학위자)
※E-7(특정활동), E-3(연구) 비자 소지자만 가능

(2) 지원내용

- 체재비 지원 : 계약기간 3개월이상인 경우

해당업종	1인당 지원금 및 한도
제조업	계약연봉의 40% (2,000만원 한도) (지방소재 기업은 계약연봉의 50%)
지식기반서비스업5종	계약연봉의 30% (2,000만원 한도) (지방소재 기업은 계약연봉의 40%)

※ 1년6개월 이상 인력을 활용할 경우 2차년도 사업 신청가능 -> 1차년도 기지원 체재비의 **50%** 지원

※ 업체당 한도 : 5명(해당년도 내 총인원)

- 인력발굴지원 및 발굴수수료 지원: 1인당 **220만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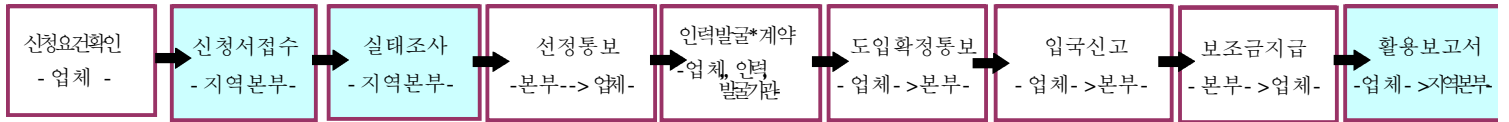
인력발굴지원	중진공 등록 발굴기관에서 인력발굴지원
발굴수수료	중진공 등록 발굴기관 활용 발굴수수료 중 220만원 지원

※중진공등록 발굴기관 별첨 확인 혹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※업체 자체발굴시는 지원없음

- 도입인력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: 국제선 **ECONOMY** 기준

(3) 지원 절차 : 중진공지역본부(접수, 실태조사, 사후관리)
 본부 구조고도화처 (선정통보~보조금지급)



·신청요건확인 : -지원대상 업종 확인

-신용정보관리규약상, 연체, 금융질서문란, 법정관리 등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자는 제외

-신청제한 : 동사업 기지원 업체 중,

·선정인원이 모두 도입 실패한 경우, 도입기한으로부터 3개월내 신청제한

·보조금지원 후 보고서 미제출업체는, 보고완료시까지 신청제한

·도입인력과 의 중도 계약 해지시,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제한

·도입진행중인 업체는, 해당 인력 입국 후 추가신청가능

·보조금 반환 미이행업체는, 반환 후 1년내 신청제한

·동일인력으로 기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제한(단, 2차년도 신청은 가능)

-인력제한 : 동사업 기도입 인력 중, 중도해지 이력있는 인력은 지원제외

·자체발굴한 인력으로 신청시 : 사업신청서와 함께 해당 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해야 함

·입국신고 : 도입인력 입국시, 입국신고서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 (항공권, 근로계약서, 발굴수수료지급서류 등)

·보조금지급 : 증빙서류 확인 후, 보조금 지급

·활용보고서 : 인력활용보고서, 출근표, 급여지급증빙 등을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제출

(4)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(보조금 회수 등)

계약기간 중도해지의 경우는 선지원한 보조금 회수

나. 외국인전문가컨설팅지원(단기 컨설팅)

- 외국인전문가를 도입하여 연90일 이내 컨설팅을 실시
→ 총소요비용(전문가 항공료, 자문료, 체재비, 보험료)의 60~70% 지원

(1) 지원내용

- 총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: 컨설팅실일수 년 90일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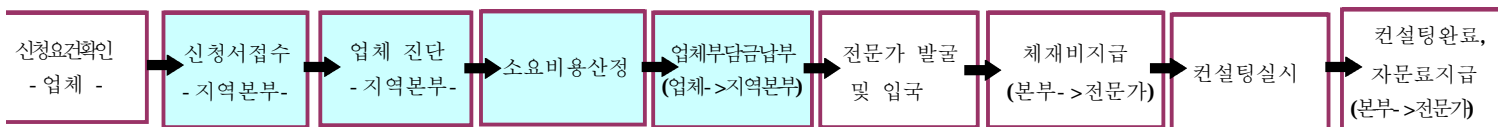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구분	신청 건당 지원금
상시근로자수 20인미만	총소요비용의 70%까지 지원 (최저 업체부담금 30%)
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	총소요비용의 60%까지 지원 (최저 업체부담금 40%)

※ 업체당 한도 : 컨설팅 일수 연간 90일내(신청회수는 제한 없음)

※ 총소요비용 : 왕복항공료+(일지문료×컨설팅일수)+보험료+체재비

- 외국인전문가 발굴 지원 : 중진공 외국인전문가DB 및 해외사무소를 통한 발굴지원
- 외국인전문가 도입업무 지원 : 항공발권, 보험부보, 자문료 지급 등

(2) 지원 절차



- 소요비용 직접 지원 : 항공료, 체재비, 자문료, 보험을 중진공에서 외국인전문가에 직접 지급
- 업체부담금 납부 : 업체부담금을 중진공에 업체가 납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함.

5. 신청 방법 및 문의처 : 신청서양식 첨부 참조

가.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 : 신청서작성 후, 우편 혹은 방문 접수
(접수 및 문의 : 중진공 지역본부 해외기술인력도입 담당자)

나. 외국인전문가컨설팅지원 : 신청서작성 후, 팩스 송부
(접수 및 문의 : 중진공 지역본부 구조고도화센터)

지역본부	해외기술인력도입 담당자	외국인컨설팅지원 구조고도화센터	
		전화	팩스
서울	02- 769- 6825	02- 769- 6774~6776	02- 769- 6839
부산	051- 630- 7421	051- 630- 7401~7407	051- 646- 0516
대구경북	053- 601- 5263	053- 601- 5296,5277	053- 601- 5302
인천	032- 450- 0507	032- 450- 0543~0545	032- 442- 3237
광주전남	062- 600- 3042	062- 600- 3041~3042	062- 600- 7518
대전충남	042- 8660- 1133	042- 8660- 131,142	042- 866- 0149
울산	052- 277- 3283	052- 277- 3283	052- 277- 3281
경기	031- 259- 7913	031- 259- 7941~7949	031- 259- 7902
경기북부	031- 920- 6732	031- 920- 6732~6735	031- 903- 0749
충북	043- 230- 6823	043- 230- 6821~6823	043- 230- 6888
전북	063- 210- 9933	063- 210- 2932~2933	063- 213- 2136
경남	055- 212- 1387	055- 212- 1384~1388	055- 212- 1360
강원	033- 256- 9611	033- 256- 9613	033- 256- 9614
강원영동	033- 646- 9967	033- 646- 9967	033- 646- 9969
제주	064- 751- 2055	064- 751- 2055	064- 751- 2058